

2023학년도 하계방학 및 2학기

국내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관) 안내집



취업처 현장실습지원팀



현장실습부

국내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주요 확인사항

1. 현장실습학기제 운영형태 구분

- 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 운영
- 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학기제 일정범위 내에서 학교별 운영기준에 따라 자율 운영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형태에 따른 대학 운영 기준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시간	실습기관의 정규근로일수(예 주5일) 및 시수 동일하게 운영	기본 주5일 1일 6시간 이상 실습원칙
실습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직무교육배정시간	교육시간 비율 10~25% 이하	교육시간비율 25~50% 이하
실습지원비 (월 기준 지급) * 산출기준 : 8-9페이지 참조	<p style="text-align: center;">실습지원비 지급 의무</p> <p>- 교육시간 비율(10-25%이하)에 따른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최소 75%이상 지급</p>	<p style="text-align: center;">실습지원비 지급 의무</p> <p>- 교육시간비율(25-50%이하)에 따른 실습지원비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최소 50% 이상 지급</p>
근로계약 체결	실습기관 필요에 따라 체결 가능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범위 내)	체결 불가

3.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 안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 3. 9.)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즉,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집행 등 비용처리 관련문의는 **국세청(126)**으로 문의

4. 학생 보호

가. 휴게 및 휴일 보장 (보장된 휴일은 유급휴일로 함)

- 1일 기준 1시간 이상 휴게시간, 1주 기준 1일 이상 휴일, 1개월 기준 1일 휴일 보장

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가입 의무

다. 근로계약체결은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100%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지원할 경우 체결 가능

* 체결기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체결
-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최저임금법 및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 운영 (지원비적 성격+임금의 성격)
예) 근로계약 체결전: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75% 수준
 근로계약 체결시: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100% 이상 지급
- 산재보험 가입기준: 산재보험법 현장실습생 특례조항에 따른 가입이 아닌, 근로계약에 따른 산재보험 요건으로 가입 및 4대보험 가입

1. 현장실습 교육과정 유형

운영학기	교육과정	실습기간	인정학점	비고
계절학기	방학과정(단기)	4주(160시간)	3학점	1개월
	방학과정(중기)	8주(320시간)	6학점	2개월
정규학기	학기과정(장기)	12주(480시간) - 16주(640시간)	9, 12학점	3-4개월
계절학기 + 정규학기	방학/학기 연계과정 (단·중기+장기)	20주 - 24주	15, 18학점	5-6개월

※ 20주 이상의 실습기간 신청 시, 현장실습 교육과정 “방학/학기 연계과정” 으로 신청하여 참여학기별 각 신청서 작성 요청. 예) 2023-하계방학 1건, 2023-2학기 1건 신청서 총 2건 작성

※ 실습시간은 실습기관 정규근로시간(일 6-8시간)에 따름

2. 실습기관 모집 및 운영일정

운영학기	교육과정	실습기관 모집기간		실습가능기간 (첨부1 조건표 참조)
		집중모집기간	추가모집기간	
계절학기 (2023-하계방학)	방학과정 (4주-8주)	23.04.24.(월) ~ 05.19.(금)	23.05.15.(월) ~ 06.09.(금)	23.06.21.(수) ~ 23.08.31.(목)
계절학기 (2023-하계방학) + 정규학기 (2023-2학기)	방학/학기 연계과정 (20주-24주)			23.06.21.(수) ~ 24.01.07.(일)
정규학기 (2023-2학기)	학기과정 (12주-16주)	23.06.26.(월) ~ 07.21.(금)	23.07.17.(월) ~ 08.04.(금)	23.08.21.(월) ~ 24.01.07.(일)

※ 실습기간 작성 시 유의사항

- 실습기간 내 기업(관) 자체 휴무일(집중휴가, 창립기념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무일 제외 평일 5일 기준 교육과정별 기본주수에 맞추어 실습기간 작성 요 (최소 1개월 이상 실습)

3. 현장실습 참여 신청방법

가. 신청인원: 실습기관별 학생 파견요청 인원은 제한 없음

나.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영남대 현장실습 홈페이지 (<http://pra.yu.ac.kr>) 온라인 신청 접수
- 신청 매뉴얼: 붙임의 “[기업용] 현장실습 참여기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조

다. 실습기관 승인: 실습기관 신청 후, 대학에서 검토(기업요건, 직무내용, 주차별 계획)하여 승인 이후부터 학생 지원 가능

4. 운영 절차 [실습기업 담당자 참고용]

1단계	참여희망 기업(기관) 모집	실습기관 집중모집기간
	실습기관: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pra.yu.ac.kr) - [기업관리] - [현장실습참여신청] 작성	
↓		
2단계	참여학생 모집 및 대학 추천	실습기관별 실습생 모집기간
↓		
3단계	실습생 선발 : 면접 등을 통하여 실습생 선발	실습기관별 실습생 선발일자
	가. 학생, 실습기관: 교내 추천학생에 대한 실습기관 면담 (실습기관별 일정협의 진행) 나. 실습기관 선발처리 및 통보 -. 현장실습홈페이지-[기업관리]-[현장실습 진행관리]-[선발/협약관리] 에서 실습생 선발 -. 선발절차: 실습생목록 -> 선택학생 선발/탈락 처리 -> 학생선발완료	
↓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협약체결 ▪ 실습생 상해보험(대학) 및 산재보험(실습기관) 각 가입 	실습기관 현장실습 운영 서류 제출
	가. 실습기관 제출서류: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협약서, 산재보험증명서 각 1부 ※ 기관장 직인날인 필수 나. 제출기한: 실습시작 전까지 (최대 실습시작 후 5일 이내 제출 완료) 다. 제출처 -.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pra.yu.ac.kr)-[기업관리]-[현장실습 진행관리]-[운영 제출서류 관리]	
↓		
5단계	현장실습 수행 및 실습생 방문(유선, 서면 등) 지도	실습기간 중
	대학: 실습기관 방문 실습생 입장지도 (학생지도 및 임직원 면담)	
↓		
6단계	실습종료 및 실습결과 평가	실습종료 후 3일 이내 ※ 졸업예정자의 경우 평가 우선 요청
	실습기관: 현장실습 홈페이지-[기업관리]-[현장실습 진행관리]-출근부관리, 주간보고서 확인, 실습생평가, 설문조사 각 작성	

- 실습생 선발 시, 가급적 사전면담(실습생 면접) 진행 후 선발관리(선발/탈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생 선발일자 지정: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실습생 면접일자(면접일자 없는 경우, 모집종료 일 기준) 이후 1주일 내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하신 실습생 선발일자 기간 내에 현장실습홈페이지 상 선발결과 처리 후, 학생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학 현장실습생 지원사항

- 가. 현장실습 사전교육 시행
 - 산업안전교육, 직장예절 및 직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현장실습 교육과정
- 나. 현장실습생 상해보험 가입 (산재보험과 별개)
- 다.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6. 실습기관 현장실습생 지원 요청 사항

가.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시, 현장실습 진행 불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09.11.]

※ 상세문의 : 근로복지공단

나. 실습지원비 지급 (직무교육 배정시간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액 지급)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2023년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75% 이상 지급

- 일 8시간 기준 월 1,507,935원 / 일 6시간 기준 월 1,132,755원

2)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2023년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 50% 이상 지급

- 일 8시간 기준 월 1,005,290원 / 일 6시간 기준 월 755,170원

다. 현장실습 사업장 내 안전교육 필수 및 실습기간 중 근태관리 철저

라.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 및 직무수행 기회 제공

마. 실습연장은 학생의 동의하에 1주 5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별도의 실습지원비 지급

※ 연장실습 실습지원비 산정기준 :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50/100 이상 * 연장 실습시간

바. 기타 학생보호에 관한 조치

7. 실습기관 지원 사항

가. 실습기관 지원금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LINC 3.0, RIS 참여 실습기관 지원)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인 경우, 대학에서 실습기관에게 최저임금의 25% 지원금 지원

나.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1) 교육부 주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2) 산학협력마일리지 제도

가) 현장실습 등에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기업(관) 대상 정부 과제사업 참여 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나) 적립기준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최저임금의 75%이상 실습지원비 지급): 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

- 현장실습생 채용: 대학생 현장실습 이수학생 채용 1명당 300마일리지

3) 세부혜택 및 마일리지 적립내역 확인: '산학협력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muic.or.kr>) 참조

8. 기타 안내사항

가. 대학 현장실습 방문지도 실시

- 방문기간: 실습기간 중 최소 1-2회 (직접 방문지도 불가 시, 유선상 지도)

- 방문자: 소속 학생 전공주임 및 산학교수, 교직원

나. 현장실습학기제(수업) 연계 국가근로 관련 사항은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현장실습]-[국내현장실습]-“국가근로장학금 취업연계중점대학유형” 안내를 통해 확인

다. 국가재난(코로나19) 발생 시 재택근무 시행에 대해서는, 실습기간의 100분의 25 이하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그 이상으로 실시 필요할 시, 학교와 협의 요청)

9. 문의
가. 취업처 현장실습지원센터(현장실습지원팀)

- 1) TEL: 053-810-1045~1050, 4584 2) FAX : 053-810-2020
 3) E-mail: jadamsy@yu.ac.kr / yeonjij22@yu.ac.kr / job@yu.ac.kr
 4) 주소: 우)712-749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학생지원센터 101호 현장실습지원팀

나. 각 소속대학 행정실: 영남대 홈페이지-교육-대학-대학안내 페이지 참조 (TEL. 053. 810 ~)

대학	학부(과)	내선번호	비고	대학	학부(과)	내선번호	비고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3160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2250	
	국어국문학과	2110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구. 언론정보학과)	2270	
	영어영문학과	2130	◎		행정학과	2630	◎
	역사학과	2220	◎		정치외교학과	2640	◎
	유럽언어문화학부 (프랑스어문전공, 독일언어문화전공)	2180	◎		심리학과	2230	◎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2350		경영대학	무역학부	3215	
	수학과, 물리학과	2310			경영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과	2320			회계세무학과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2410			경제금융학부	7816	◎
	신소재공학부	2470		생명융공과대학	의생명공학과, 생명공학과	3020	
	화학공학부	2510			식품자원경제외식학과, 식품공학과	2950	◎
	건축학부	2590			원예생명과학과	2907	◎
	파이버시스템공학과	2770	◎		산림자원및조경학과	2970	◎
	도시공학과	2430	◎		생활과학대학	의류패션학과	2790
	환경공학과	2540	◎	식품영양학과, 주거환경학과		2870	◎
기계IT대학	기계공학부	4873		가족주거학과, 휴먼서비스학과		2930	◎
	미래자동차공학과	3086		체육학부	3763	◎	
	로봇공학과	3035		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3310	
	전기공학과	2480			시각디자인학과		
		2580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전자공학과	2490		글로벌인재대학	새마을국제개발학과	2680	
	컴퓨터공학과	3858			중국어언어문화학과	1570	◎
	정보통신공학과	3295			※ 비고란 (◎) : 현장실습 재정지원사업 비참여 학부(과)		

현장실습 기간 조건표

▶ 학점인정학기: 2023학년도 여름방학

단기 현장실습(4주 이상)				중기 현장실습(8주 이상)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2023-06-21	수	2023-07-20	목	2023-06-21	수	2023-08-20	일
2023-06-22	목	2023-07-21	금	2023-06-22	목	2023-08-21	월
2023-06-23	금	2023-07-22	토	2023-06-23	금	2023-08-22	화
2023-06-24	토	2023-07-23	일	2023-06-24	토	2023-08-23	수
2023-06-26	월	2023-07-25	화	2023-06-26	월	2023-08-25	금
2023-06-27	화	2023-07-26	수	2023-06-27	화	2023-08-26	토
2023-06-28	수	2023-07-27	목	2023-06-28	수	2023-08-27	일
2023-06-29	목	2023-07-28	금	2023-06-29	목	2023-08-28	월
2023-06-30	금	2023-07-29	토	2023-06-30	금	2023-08-29	화
2023-07-01	토	2023-07-31	월	2023-07-01	토	2023-08-31	목
2023-07-02	일	2023-08-01	화				
2023-07-03	월	2023-08-02	수				
2023-07-04	화	2023-08-03	목				
2023-07-05	수	2023-08-04	금				
2023-07-06	목	2023-08-05	토				
2023-07-07	금	2023-08-06	일				
2023-07-10	월	2023-08-09	수				
2023-07-11	화	2023-08-10	목				
2023-07-12	수	2023-08-11	금				
2023-07-13	목	2023-08-12	토				
2023-07-14	금	2023-08-13	일				
2023-07-17	월	2023-08-16	수				
2023-07-18	화	2023-08-17	목				
2023-07-19	수	2023-08-18	금				
2023-07-20	목	2023-08-19	토				
2023-07-21	금	2023-08-20	일				
2023-07-24	월	2023-08-23	수				
2023-07-25	화	2023-08-24	목				
2023-07-26	수	2023-08-25	금				
2023-07-27	목	2023-08-26	토				
2023-07-28	금	2023-08-27	일				
2023-07-31	월	2023-08-30	수				
2023-08-01	화	2023-08-31	목				

※ 유의사항

- ① 현장실습은 평일 주5일 근무 원칙.
- ②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기업(기관)의 휴가, 행사일, 기타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결근일 등은 현장실습 출석일 산출기준(인정일수)에서 제외함.

※ 현장실습 교육과정별 기본 실습주수 내 결근일 발생 시 학교와 상의 후 추가근무를 시행해야 함.

현장실습 기간 조건표

▶ 학점인정학기: 2023학년도 2학기

장기 현장실습(12주 이상)				장기 현장실습(16주 이상)				장기 현장실습 (20주 이상)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2023-08-21	월	2023-11-20	월	2023-08-21	월	2023-12-20	수	운영과정 (방학/학기 연계과정) 선택
2023-08-22	화	2023-11-21	화	2023-08-22	화	2023-12-21	목	
2023-08-23	수	2023-11-22	수	2023-08-23	수	2023-12-22	금	
2023-08-24	목	2023-11-23	목	2023-08-24	목	2023-12-23	토	
2023-08-25	금	2023-11-24	금	2023-08-25	금	2023-12-24	일	
2023-08-27	일	2023-11-26	일	2023-08-27	일	2023-12-26	화	
2023-08-28	월	2023-11-27	월	2023-08-28	월	2023-12-27	수	
2023-08-29	화	2023-11-28	화	2023-08-29	화	2023-12-28	목	
2023-08-30	수	2023-11-29	수	2023-08-30	수	2023-12-29	금	
2023-08-31	목	2023-11-29	수	2023-08-31	목	2023-12-30	토	
2023-09-01	금	2023-11-30	목	2023-09-01	금	2023-12-31	일	
2023-09-04	월	2023-12-03	일	2023-09-04	월	2024-01-03	수	
2023-09-05	화	2023-12-04	월	2023-09-05	화	2024-01-04	목	
2023-09-06	수	2023-12-05	화	2023-09-06	수	2024-01-05	금	
2023-09-07	목	2023-12-06	수	2023-09-07	목	2024-01-06	토	
2023-09-08	금	2023-12-07	목	2023-09-08	금	2024-01-07	일	
2023-09-11	월	2023-12-10	일					

※ 유의사항

- ① 현장실습은 평일 주5일 근무 원칙.
- ②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기업(기관)의 휴가, 행사일, 기타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결근일 등은 현장실습 출석일 산출기준(인정일수)에서 제외함.
 ※ 현장실습 교육과정별 기본 실습주수 내 결근일 발생 시 학교와 상의 후 추가근무를 시행해야 함.
- ③ 장기 20주 이상 실습의 “방학/학기 연계과정” 신청의 경우, 각 학점인정학기별 실습기간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

[첨부2]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

1. 실습시간 산출기준

가. 주 단위 실습시간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나.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2.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가.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나.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다. 연장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만약 1주 기준 5시간 한도로 연장실습이 발생될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연장 실습지원비

= 연장 실습시간 수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5

라.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

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 지급

마. 최소 1개월 이상의 월 단위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 주 단위/ 주 단위 일할 계산 지급기준 산출

3. 현장실습학기제 구분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사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p>※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산출 시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p> <p style="background-color: #ffe6e6;">(Case1) 1일 8시간, 주 5일, <u>교육시간 25%</u>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8 \times 5 + 8) = 48\text{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8\text{시간} \times 0.75 \times 8,720\text{원} = 313,920\text{원/주}$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8 \times 5 + 8) \div 7] \times (365 \div 12) = 208.57 \approx 209\text{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9\text{시간} \times 0.75 \times 8,720\text{원} = 1,366,860\text{원/월}$ 	<p style="background-color: #ffe6e6;">(Case1) 1일 8시간, 주 5일, <u>교육시간 50%</u>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8 \times 5 + 8) = 48\text{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8\text{시간} \times 0.5 \times 8,720\text{원} = 209,280\text{원/주}$ ※ 교육시간 25%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313,920원/주 대비 67% 수준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8 \times 5 + 8) \div 7] \times (365 \div 12) = 208.57 \approx 209\text{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9\text{시간} \times 0.5 \times 8,720\text{원} = 911,240\text{원/월}$ ※ 교육시간 25%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1,366,860원/월 대비 67% 수준
<p>※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산출 시 /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p> <p style="background-color: #ffe6e6;">(Case3) 1일 7시간, 주 5일, <u>교육시간 25%</u>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7 \times 5 + 7) = 42\text{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2\text{시간} \times 0.75 \times 8,720\text{원} = 274,680\text{원/주}$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7 \times 5 + 7) \div 7] \times (365 \div 12) = 182.5 \approx 183\text{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83\text{시간} \times 0.75 \times 8,720\text{원} = 1,196,820\text{원/월}$ 	<p style="background-color: #ffe6e6;">(Case2) 1일 6시간, 주 5일, <u>교육시간 40%</u>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6 \times 5 + 6) = 36\text{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36\text{시간} \times 0.6 \times 8,720\text{원} = 188,352\text{원/주}$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6 \times 5 + 6) \div 7] \times (365 \div 12) = 156.43 \approx 157\text{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157\text{시간} \times 0.6 \times 8,720\text{원} = 821,424\text{원/월}$